KOSHA GUIDE

M - 60 - 2012

간이 측정법을 이용한 작업장의 미끄러짐 측정방법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6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ㅇ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정수

ㅇ 개정자 : 안전연구실 김정수

o 제·개정경과

- 2011년 6월 기계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
- 2012년 4월 기계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ㅇ 관련규격 및 자료

- 연구원 2008-149-1492 : 전도재해 정밀분석 및 예방기법 연구

- ANSI/NFSI B101.1-2009: Test method for measuring wet SCOF of common hard-surface floor materials

- VOSI V41.21-98: Universal specification/test method for slip resistant walkways, in the field & laboratory as measured by a drag type friction tester

- VOSI V41-22: Universal specification/test method for slip resistant footwear, in the field & laboratory as measured by a drag type friction tester
- 연구원 2010-157-1065 : 안전화 미끄럼도 측정기준 및 장비개발
- o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 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 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○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6 월 20 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간이 측정법을 이용한 작업장 미끄러짐 측정방법에 관한 기술지침

### 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3 조 (전도의 방지)와 제22조(통로의 설치) 의거 간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작업장의 미끄러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미끄러짐 측정방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고 표면이 단단한 바닥재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미 끄러짐 위험성 평가 및 재해예방 활동 시에 적용한다. 단,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한 경우나 표면 요철이 심한 바닥재의 경우는 제외된다.

#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간이 측정법"이란 표준 무게추(4.5 kg)와 인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(200 N까지 가능한 휴대용 측정기) 및 고무센서(네오라이트)로 구성되며 인력 또는 동력을 이용하여 수평방향으로 끌어 센서와 바닥면 사이의 마찰력을 측정하여 바닥면의 미끄러짐 위험성 정도를 판단하는 측정법을 말한다.
  - (나) "마찰력"이란 인접한 다른 표면 위에서 특정 물질의 표면이 미끄러질 때 또는 미끄러지려고 할 때 발생하는 저항하는 힘이다.
  - (다) "정지마찰계수(SCOF; Static coefficient of friction)"란 저항을 극복하고

움직이기 시작할 때, 물체와 바닥사이에 발생하는 수직력과 수평력의 비로서 정마찰계수라고도 한다. 단, 센서(고무)와 바닥면 사이의 접촉시간이 3초를 초과할 경우 정지마찰계수로 인정되지 않는다.

- (라) "동마찰계수(DCOF; Dynamic coefficient of friction)"란 두 가지의 물체 사이에 거시적인 상대운동이 있을 때의 마찰계수이다.
- (마) "미끄러짐 저항성 보행로"란 정상보행 시 신발겉창에 발생하는 압력(173~346 kPa)과 동일하게 센서에 압력을 가했을 때, 센서와 물로 젖은 수평면 사이의 평균 정지마찰계수가 0.45 이상인 보행로 표면을 말한다. 또한 젖은 상태에서 동마찰계수는 이동속도가 0.05 %에서 최소 0.30 이어야 하며 젖은 정지마찰계수에 대한 건조 정지마찰계수의 비가 최대 1.50이어야 한다.
- (바) "미끄러짐 저항성 신발"이란 정상보행 시 신발겉창에 발생하는 압력(173~346 kPa)과 동일하게 매끈한 신발겉창 시편과 표준바닥재(쿼리타일)사이에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간이측정법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소 0.45 이상의 정지마찰계수를 나타내는 신발을 말한다. 또한 젖은 상태에서 동마찰계수는 0.05 %에서 최소 0.30 이어야 한다.
- (사) "센서"란 건조 및 젖은 상태의 시험에 사용되는 표준고무(네오라이트)를 말한다.
- (아) "쿼리 타일(Quarry tile)"이란 도기타일의 일종으로 점토를 정제하여 금속 형판으로 압축성형하고 적절한 크기로 절단한 후 고온에서 구운 무유타 일을 말한다. 제작방법으로 인하여 크기가 제한적이고 압축으로 인해 다 공성이 2%~5%정도로 나타난다.
- (자) "무유타일"이란 재벌구이에서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워 표면에 광택이 없고 어느 정도 다공성인 타일을 말한다.
- (차) "세제수용액"이란 황산라우릴나트륨(SLS; Sodium lauryl sulfate)를 중량 비로 0.5% 함유한 증류수로 젖은 바닥의 시험에 사용되는 표준 오염물

질을 말한다.

- (카) "네오라이트(Neolite™)"란 일반적으로 신발의 겉창물질로 사용되는 고무소재로, ASTM D297에 의해 측정될 경우 평균 비중이 1.27±0.02이고 ASTM D2240 시험법에 의해 측정될 경우 쇼어 스케일 A경도 평균값이 93~96을 갖는 실험실 등급의 표준 측정 물질을 말한다. 네오라이트 센서는 시험 시작 전에 적어도 5분 이상 증류수나 탈이온수에 담가 두어야 한다.
- (타) "그라우트(Grout)"란 2개 이상의 타일 연결부로 회반죽으로 채워져 있거나 비어 있는 줄눈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 4. 측정기법

이 측정법은 예상된 사용 환경 아래 바닥 또는 보행로 표면의 젖은 정지마찰 계수를 측정하도록 설계된 어떠한 알려진 혹은 직접 구성한 측정기를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. 보행로 표면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재질들은 이 시험법에서 제외된다. 그 예는 모래 또는 자갈 판, 바위, 거친 아스팔트, 임의 의류 및 천 재질 등이다.

#### 4.1 측정장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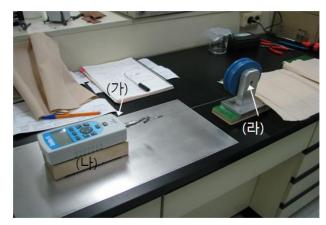
- (1) 간이 미끄러짐 측정장치는 <그림 1>과 같이 (가) 하중 게이지 또는 로드셀/끌게 조합, (나) 표준 무게추, (다) 접촉부에 부착된 고무센서, (라) 시험될 면을 따라 장치를 끌 수 있는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. 수평방향으로 끄는 동력원은 전동모터이거나 인력으로 구성된다.
- (2) 수직하중은 접촉압력이 173 세월보다는 크고 346 세월보다 작도록 하여야하며

### KOSHA GUID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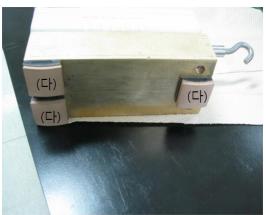
M - 60 - 2012

표준 보정 하중추는 미끄럼판 조합(하중게이지+표준 무게추=4.5±0.018 kg) 의 절반 무게와 같다(2.25±0.009 kg). 센서재질은 네오라이트를 사용하여야 한다.

(3) 접촉부의 센서 부착방법은 <그림 2>와 같이 3개소에 부착하되 직경이 3.68 ~5.2 mm인 원형으로 부착하거나 <그림 2>와 같이 사각형으로 부착하되 전체 접촉면의 면적이 127~255 mm가 되도록 할 하여야 한다.



<그림 1> 간이 미끄럼 측정 장치



<그림 2> 센서 부착 위치

#### 4.2 측정방법

#### 4.2.1 측정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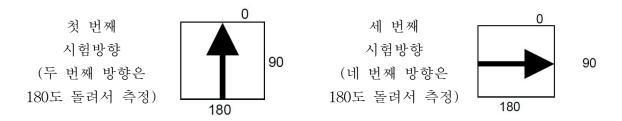
- (1) 센서표면의 다듬질
- (가) 균일한 표면을 얻기 위해 건조한 60번 연마지로 고무표면의 광택이 없어 질 때까지 연마를 하고 400번 연마지로 15회 추가적으로 연마한다.
- (나) 종이타울을 이용하여 센서로부터 외부물질과 고무 찌꺼기를 털어낸다.
- (2) 탈이온수나 증류수로 센서표면을 세척
- (가) 화학약품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이타올이나 보푸라기가 없는 천으로 건조 하게 닦는다. 지문, 화학물질, 먼지 등에 의해 시험면이 오염되지 않도록

주의하여야 한다.

- (나) 보푸라기가 없는 또는 조금 있을 수 있는 타올이라도 정지마찰계수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하지말아야 한다.
- (3) 세제수용액으로 시험면을 적심
- (가) 센서 표면은 정지마찰계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의 축적을 막을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.
- (나) 네오라이트 시험 재질은 시험과정이 시작되기 전 최소 5분 이상 증류수 또는 탈이온수 속에 담가 두어야 한다.

#### 4.2.2 실험실 측정

(1) 측정장치를 측정해야할 바닥재 위에 올려놓고 <그림 3>과 같이 한 방향으로 측정을 수행하고 측정값을 기록한다.



<그림 3> 바닥면 측정방향

- (2) 측정장치를 (1)에서 수행한 방향과 180도 돌려서 두 번째 방향으로 시험을 수행하고 정지마찰계수를 기록한다.
- (3) 시험면을 90도 돌려서 측정기를 표면에 놓고 세 번째 방향으로 시험을 수행하고, 측정값을 기록한다.
- (4) 다시 180도 돌려서 네 번째 방향으로 시험을 수행한다. 측정값을 기록한다. 만일 필요하다면 시험 중 표면에 추가적으로 세제수용액을 공급할 수 있다.

### KOSHA GUIDE

#### M - 60 - 2012

- (5) 위와 같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측정을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더 각 방향에 대하여 측정을 하여 평균값을 기록한다. 단, 첫 2번째 방향까지 측정값이 나머지 측정값과 0.05 이상 편차가 발생할 경우, 첫 2번째 방향은 다시 측정한다.
- (6) 한 종류의 바닥재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3개의 개별 타일이나 4개소 이상의 상이한 측정영역에서 측정하여야 한다.
- (7) 3개의 개별타일 또는 4개소 이상의 상이한 측정영역에서의 평균값을 다시 평균함으로서 한 종류의 바닥재에 대한 최종 정지마찰계수 값을 결정한다.

#### 4.2.3 작업장 측정방법

#### (1) 주의사항

- (가) 시험되어야 할 바닥/보행로 표면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측정장치의 정상 작동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간이 있어야 한다.
- (나) 최소한 두 방향(90도)으로 각 표본 영역이 시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만일 가능하다면 하나의 측정방향은 정상 보행자의 보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. X-Y 양방향으로 시험이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한 경우(계단과 같이 한쪽방향으로만 측정이 가능한 경우), 최종 시험결과 보고서에는 제한된 시험영역임을 나타내어야 한다.
- (다) 어떠한 경우에도 어려운 상황을 보정하기 위하여 측정장비를 변경하거나 수동으로 조작되어서는 안 된다. 이들 금지조항에는 밀기, 끌기, 들어올리 기, 기울이기 또는 다른 교묘한 처리방법들이 포함된다. 물론 금지조항이 이러한 조작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.
- (라) 타일 바닥재에 대해 측정이 이루어질 때, 가능하다면 그라우트 연결부를 직접 시험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마) 센서표면은 정지마찰계수 시험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의 축

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시험 시작 전 최소 5분 동안 증류수나 탈이온수속에 담가 두어야 한다.

### (2) 측정순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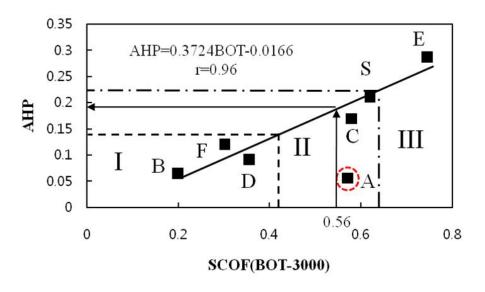
- (가) 센서의 준비는 4.2.1과 동일하게 한다.
- (나) 측정 대상 구역을 충분한 길이와 폭으로 세제수용액으로 적신다.
- (다) 바닥 표면 위에 측정장치를 올려놓고 한쪽 방향으로 2회 측정을 수행한다. 평균 정지마찰계수를 기록한다.
- (라) 측정 후 측정면은 보푸라기가 발생하지 않는 건조한 천으로 수분을 제거하고, 측정면 조건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- (마) 각각의 측정 후 센서 표면이 오염이나 변형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필요 하다면 4.2.1에 해당하는 과정을 반복한다.
- (바) 원래의 측정방향과 90도로 돌려가며 위의 측정순서를 반복한다.
- (사) 측정되는 각각의 구역에 대해 양쪽 방향으로 측정을 반복한다.
- (아) 만일 측정면이 방향에 따른 명확한 편향이나 결(나무 바닥재와 같이)을 보인다면 측정은 90도씩 따로 4방향에 대하여 수행하고 각 방향에 대하 여 측정값을 기록한다.

#### 5 측정결과의 분석

- (1) 측정된 각각의 결과 값에 대해, 0.01에 근접하게 정지마찰계수를 기록하고 평균 정지마찰계수를 계산한다.
- (2) 측정은 10회 실시하며 첫 2회는 평균값 계산에서 제외시킨다. 단, 8회 측정 값 중 평균값에서 0.05 이상 편차가 발생한 데이터는 추가로 제외시키고 제

외된 회수만큼 다시 측정한다.

- (3) <그림 4>는 수평 끌기형 마찰계수 측정기로 측정한 정지마찰계수와 인지 적 판정기준(AHP; Analytic hierarchy process)으로 측정한 위험영역 결과 를 나타낸 그림이다. 판정영역은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기존의 연구결과 와 유사한 범주를 나타난다.(ANSI/NFSI B101.1보다 0.2~0.3 정도 높게 나 타남)
- (4) <표 1>은 측정된 각 범위에 대한 위험성 정도와 대책방안을 ANSI/NFSI B101.1에 준하는 방식으로 나타낸 표이다.
- (5) 간이 측정기를 이용한 방법도 기본적으로 끌기형 마찰 측정기이므로 동일 한 판정기준을 이용할 수 있다.
- (6) 단, 연마된 매끈한 타일, 대리석 및 요철이 있는 타일은 이러한 간이 측정 방식으로 정확하게 위험성을 판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.



<그림 4> 수평끌기형 마찰 측정기의 정지마찰계수와 인지적 판정기준 비교

<표 1> 정지마찰계수로 분류한 위험성 정도 및 대책방안

| 정지마찰계수(μ)               | 위험성 정도          | 대책방안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|
| SCOF ≥ 0.63             | 낮은 미끄러짐 위험성     | 주기적으로 정지마찰계수를 감<br>시하고 청결하게 유지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$0.42 \leq SCOF < 0.63$ | 허용 가능한 미끄러짐 위험성 | 주기적으로 정지마찰계수를 감<br>시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고, 접<br>지력을 향상시킨 제품과 기술<br>을 이용할 것 |
| SCOF < 0.42             | 높은 미끄러짐 위험성     |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<br>높은 접지력을 가진 제품으로<br>바닥을 교체할 것                   |

# 6 측정결과 기록

측정결과 보고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(1) 시험된 보행로 및 표면 물질의 형태
- (2) 측정 지역 및 장소의 위치
- (3) 시험된 각 지역의 평균값
- (4) 시험된 장소의 설명(예, 그리스, 항상 젖음, 먼지, 손상된 타일 등)
- (5) 측정 장소의 온도 및 습도
- (6) 시험결과의 출력물
- (7) 검사자/기술자의 확인

# 7 측정 시 고려사항

## 7.1 측정장소 주변의 잠재적 위험성

- (1) 측정된 지역에 측정 시 사용한 물통, 종이타올 및 기타 측정에 사용된 물품을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. 측정 장소에 남겨진 물체에 걸려 사람들이 넘어 질 수 있다.
- (2) 만일 다른 곳에서 시험을 빨리 마치고 되돌아올 예정이더라도 각각의 시험 후 바닥이나 보행로의 잔류물(물 등)을 닦아 내야 한다.
- (3) 현재 상황에 대해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안전콘, 방책 및 표지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#### 7.2 측정 환경

- (1) 장비를 보관하거나 조작하기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는 제조사의 설명서나 절차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따라야 한다. 부득이하게 직접 제작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온도는 25±2 ℃, 습도는 50±5 %(상대습도)가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2) 시험구역에서 정상상태로 고려되는 환경조건에서 정지마찰계수 측정이 수 행되어야 하나 현장의 조건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측정 시의 온도, 습도를 기록하고 실험실에서 측정 시와 동일조건으로 실험하여 보정토록 한다.